

| 로고                                                                                                                        | 정보공개서  |               | 홈페이지 주소               |
|---------------------------------------------------------------------------------------------------------------------------|--------|---------------|-----------------------|
| <br><small>GROW INTO A NEW HABIT</small> | 등록번호   | 20120600028   | www.caffeandstuff.com |
|                                                                                                                           | 최초 등록일 | 2012. 06. 28. |                       |
|                                                                                                                           | 최종 등록일 | 2024. 09. 27. |                       |

## [카페앤스터프]

### 정 보 공 개 서

[카페앤스터프 체인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카페앤스터프 체인본부]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10길 3-2, 5층(율하동)]

가맹본부 대표전화번호 [053-965-1491]

가맹본부 대표팩스번호 [053-965-1495]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팀 [053-965-1491]

## 목 차

|                                        |  |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  |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  |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카페앤스터프 체인본부'의 '카페앤스터프')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카페앤스터프'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 호            | 영 업 표 지    | 주 소                           |         |              |              |
|----------------|------------|-------------------------------|---------|--------------|--------------|
| 카페앤스터프<br>체인본부 | 카페앤스터프 외 1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10길 3-2, 5층(율하동)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개인사업자      | 2007. 11. 14.                 | 박병우     | 053-965-1491 | 053-965-1495 |
|                |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502-24-12783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카페앤스터프]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카페앤스터프                                                                                                                        | -     |
| 상 호       | 카페앤스터프<br>[                      ]점                                                                                           | -     |
| 상표(서비스표)  | CAFFE AND STUFF<br><br>Grow into a new habit | -     |
| 광고        | -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br>GROW INTO A NEW HABIT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 | 11,224 | 777  | 10,447 | 13,190  | 3,260 | 3,260 |
| 2022 | 12,916 | 0    | 12,916 | 19,677  | 2,468 | 2,468 |
| 2023 | 16,152 | 545  | 15,607 | 184,907 | 2,691 | 2,691 |

☞ 상기 매출액은 당사 직영점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별첨 1] 참조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br>관련임원 | 박병우 | 대표   | 2007. 11. 14. ~ 현재 | 카페앤스터프 체인본부 대표 | 경영 총괄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1      | 0   | 0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했던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이름        | 상호    | 정보공개서<br>등록번호 | 가맹사업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br>박병우 | 그로우먼트 | 20120600028   | 2022. 11. 01. ~<br>현재 | ‘그로우먼트’라는 영업표지의<br>파티룸 전문 가맹사업경영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일자          | 등록번호          | 소유자 | 존속기간 만료일<br>(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CAFFE AND<br>STUFF & GROW<br>INTO A NEW<br>HABIT | 서비스표 | 2012. 03. 30. | 4102294130000 | 박병우 | 2032. 03. 30.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카페앤스터프]의 가맹사업 현황

###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1년 6월 2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7년 11월 14일)

### 2. [카페앤스터프]의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카페앤스터프      | 카페앤스터프 | 박병우     | 2007. 11. ~ 2016. 02.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10길 3-2, 5층(율하동) |
| 카페앤스터프 체인본부 | 카페앤스터프 | 박병우     | 2016. 02. ~ 현재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10길 3-2, 5층(율하동) |

### 3. [카페앤스터프]의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카페앤스터프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커피  | 커피        |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카페앤스터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2          | 1    | 1    | 2          | 1    | 1    | 2          | 1    | 1    |
| 서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부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대구 | 2          | 1    | 1    | 2          | 1    | 1    | 2          | 1    | 1    |
| 인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광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대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울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세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강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충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충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제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5. 최근 3년간 [카페앤스터프] 가맹점 수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1  | 0     | 0     | 0     | 0     | 1  |
| 2022 | 1  | 0     | 0     | 0     | 0     | 1  |
| 2023 | 1  | 0     | 0     | 0     | 0     | 1  |

#### 6. [카페앤스터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카페앤스터프]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br>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가맹본부 | 카페앤스터프체인<br>본부/박병우 | 그로우먼트 | 20120600028   | 임대 | -          | 1/0   | 2/0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천원, 부가세미포함)

| 지역 | 가맹점<br>수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평균매출액           |             | 연간평균매출액(상한) |             | 연간평균매출액(하한) |             |    |
|    |          | 연간 평균<br>매출액      | 면적<br>3.3㎡당 | 상한          | 면적<br>3.3㎡당 | 하한          | 면적<br>3.3㎡당 |    |
| 전체 | 1        | -                 | -           | -           | -           | -           | -           | -  |
| 서울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 0 | - | - | - | - | - | - | - |
| 대구 | 1 | - | - | - | - | - | - | - |
| 인천 | 0 | - | - | - | - | - | - | - |
| 광주 | 0 | - | - | - | - | - | - | - |
| 대전 | 0 | - | - | - | - | - | - | - |
| 울산 | 0 | - | - | - | - | - | - | - |
| 세종 | 0 | - | - | - | - | - | - | - |
| 경기 | 0 | - | - | - | - | - | - | - |
| 강원 | 0 | - | - | - | - | - | - | - |
| 충북 | 0 | - | - | - | - | - | - | - |
| 충남 | 0 | - | - | - | - | - | - | - |
| 전북 | 0 | - | - | - | - | - | - | - |
| 전남 | 0 | - | - | - | - | - | - | - |
| 경북 | 0 | - | - | - | - | - | - | - |
| 경남 | 0 | - | - | - | - | - | - | - |
| 제주 | 0 | - | - | - | - | - | - | - |

☞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이 5곳 미만이므로 매출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카페앤스터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8. [카페앤스터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카페앤스터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단위:日) |
|------|------------|---------------|
| 2023 | 1          | 3,560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br>(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비고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합계 | (비공개) | -  | -                          | -    | -   | -  |
| 광고 | -     | -  | -                          | -    | -   | -  |

☞ 광고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 광고 및 판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지점 또는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국민은행    | 반야월 지점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526-2 | 053-964-0145 |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1일내에 예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카페앤스터프체인본부’ 예치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053-964-0145)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stuff

03021N-D-A-512-1A4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보공개대상정보입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카페앤스터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금액 |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8,800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br>까지 예치 | 가맹사업의 공정화<br>에 관한 법률 제10<br>조의 규정에 따름 |             | 오픈 전 해지시 가<br>맹계약체결에 소요<br>된 실제 비용 및<br>당사에서 정한 기<br>준의 위약금 공제<br>후 반환 |
| 가맹비   | 5,500 |                       |                                       | 영업 개시 후     |                                                                        |
| 최초교육비 | 3,300 |                       |                                       | 교육의 개시 후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br>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br>귀책사유                                        | 비고                                                                                                                  |  |
| 계약이행보증금                                                               | 4,000 | 가맹계약<br>체결일<br>다음날<br>까지 예치 | 가맹금, 물품대금<br>미지급 및<br>계약종료후조치<br>(영업표지철거 등<br>원상회복의무)의 |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br>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br>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br>환. 다만, 계약기간 미준수시 위약별로<br>상계처리하여 미반환(가맹계약서 제40 |  |

미이행

조4항 참조)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br>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합계                                                            | 12,800             |
| 가맹비                                                           | 5,500              |
| 최초교육비                                                         | 3,300              |
| 계약이행보증금                                                       | 4,000/부가세 없음       |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49.5㎡ 기준)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br>3.3㎡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계             |        | 90,750 | 6,050          |                                                     |              |                                           |
| 인테리어 및 설비      | (협력업체) | 36,300 | 2,420          | - 계약시: 50%<br>- 중도금: 30%<br>- 완료시: 20%              | 공사 전<br>계약취소 | 5평기준(1600만원)<br>*3.3㎡ 추가<br>시 평당<br>170만원 |
| 주방기기           | (협력업체) | 37,400 | 2,493          | - 구입시: 100%                                         | 입고 전<br>계약취소 | 25평까지<br>같음                               |
| 가구             | 당사제작   | 4,950  | 330            | - 구입시: 100%                                         | 입고 전<br>계약취소 |                                           |
| 간판 및 내부<br>사인물 | (협력업체) | 5,500  | 366            | - 구입시: 100%                                         | 설치 전<br>계약취소 | 1면(3㎡)<br>기준, 추가<br>㎡당 75만원               |
| 본사지원           | 당사     | 0      | /              | 명함, 쿠폰, 앞치마, 쿠폰도장, 오픈<br>현수막 외 오픈이벤트(프리파티)시<br>원두지원 |              |                                           |
| 초도물품비          | 당사     | 6,600  | /              | - 계약시: 100%                                         | 입고 전<br>계약취소 | 입고 후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장의 운영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할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모델점을 방문하여 견학 후 [카페앤스터프]의 컨셉트에 맞도록 시공하며, 영업장의 실측된 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을 준비하여 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본

사의 실측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 등의 사용과 감리에 따른 비용으로 3.3제곱미터 마다 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사항

철거, 전기증설, 외부공사, 냉난방기, pos / 음향기기, 화장실, 어닝 등

※전면창호공사 : 1면(4m 기준) 기본시공, 추가시 1m 당 1,200천원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시공사항이므로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 급기)공사, 소방설 비, 냉난방기 등에 유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등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 해약요청일자                         | 위약벌              |
|--------------------------------|------------------|
|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20% |
|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 |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
| 계약 체결 후 5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80% |

###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점포면적에 따른 외견상의 조안과 해당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알선할 수 는 있으며 당사에 점포물색을 의뢰시 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귀하의 동의를 있는 경우만 선정이 완료되어 귀하가 입지 선정의 주체가 됩니다. |

###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br>및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br>만19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등에 대하여 분납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귀하는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br>없는 사유 | 비고                                            |
|---------------------------------|--------|----------------|-----------------------------|------------|----------------|-----------------------------------------------|
| 광고·판촉<br>분담금                    | 가맹본부   | 광고성격에 따라<br>다름 | 광고비 고지서를<br>받은날로부터<br>2주 이내 | 광고<br>미시행  | 광고시행<br>후      | V. 9.<br>1)가맹본부와<br>가맹점사업자의<br>비용 분담 기준<br>참조 |
| 영업표지<br>변경 등에<br>따른 간판<br>변경 비용 | 가맹본부   | 협의             | 협의                          | 시공 전       | 시공 후           | 교체 비용은<br>당사자의<br>귀책사유<br>등을 고려하여<br>협의       |
| 로열티                             | 가맹본부   | 월 매출액의 3%      | 매월 5                        | 반환불가       | 실비             |                                               |
| 가전/<br>주방기기                     | (협력업체) | 협의             | 협의                          | 반환불가       | 실비             |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추후 산정          | 협의                          | 교육<br>미시행시 |                |                                               |

|          |                        |                                 |                                   |  |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가<br>지정한<br>업체(미정) | 가맹본부가 요구시<br>: VII.1 외 비용<br>부담 |                                   |  |  | 가맹점사업자의<br>자발적 의사에<br>의하여<br>점포환경개선을<br>실시하는 경우는<br>예외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20%                            | 지급기간<br>경과일의<br>다음날부터<br>지급하는 날까지 |  |  | 금전 지급 기일<br>경과시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맹점과 가맹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운영관리                                                                                   | - 가맹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가맹점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br>- 운영방법 및 계획 파악을 위한 면담 및 자료요청 권리 | 1회/<br>월 | 사정에 따라<br>변경될 수<br>있습니다. |
| 회계관리                                                                                   | - 회계장부(포스) 등 경영전반에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                          |
| 레시피관리                                                                                  | - S/V 또는 M/V를 통한 매장의 균일한 레 시피 관리                                       |          |                          |
| 시설관리                                                                                   | - BI적용 및 낙후 시설 개선 요구의 권리                                               |          |                          |
| 위생관리                                                                                   | -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매장과 고 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          |                          |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주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시에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수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 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 입니다. 만약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 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 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 급한 계약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 품대금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 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 가. 잔여 계약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
| 가맹비 중 인력지원 및 매뉴얼<br>제공 대가 | 1,650  | 부가세포함     |
| 교육비                       | 3,300  | 부가세포함     |
| 계약이행보증금                   | 4,000  | 부가세 해당없음  |

나. 신규 계약 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 항목      | 금액(단위 천원) | 비고        |
|---------|-----------|-----------|
| 가맹비     | 5,500     | 부가세 포함    |
| 교육비     | 3,300     | 부가세 포함    |
| 계약이행보증금 | 4,000     | 부가세 해당 없음 |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카페 앤스터프]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카페앤스터프]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운영매뉴얼, 규정 집, 홍보매뉴얼, 전산 및 매장관리솔루션, 문서, 도면, 도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0-30271N-0-A-5127-0000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와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카페앤스터프]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카페앤스터프]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카페앤스터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는 [카페앤스터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가 상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COFFEE                   | 왼쪽에 기재된 상품 및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 구두 경고<br>2회 위반 :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 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요구 후 계약 해지 | 가맹사업법의<br>해지 절차 준용 |
| 아메리카노                    |                                    |                                                                       |                    |
| 헤이즐넛                     |                                    |                                                                       |                    |
| 카페라떼                     |                                    |                                                                       |                    |
| 스터프 그림라떼                 |                                    |                                                                       |                    |
| 바닐라/모카/연유라떼              |                                    |                                                                       |                    |
| 카라멜 마끼아또                 |                                    |                                                                       |                    |
| 콜드브루/디카페인 콜드브루           |                                    |                                                                       |                    |
| 아포가토(하겐다즈 바닐라)           |                                    |                                                                       |                    |
| NON COFFEE               |                                    |                                                                       |                    |
| 녹차라떼/홍차라떼                |                                    |                                                                       |                    |
| 흑임자라떼/고구마라떼              |                                    |                                                                       |                    |
| 딸기라떼                     |                                    |                                                                       |                    |
| 다크초코                     |                                    |                                                                       |                    |
| Blended                  |                                    |                                                                       |                    |
| 프라푸치노 (자바칩/녹차)           |                                    |                                                                       |                    |
| 오레오 스무디                  |                                    |                                                                       |                    |
| 요거트 스무디(플레인/딸기/블루베리)     |                                    |                                                                       |                    |
| Juice/ade/soda           |                                    |                                                                       |                    |
| 딸기/자몽/청포도/토마토 주스         |                                    |                                                                       |                    |
| 수박주스                     |                                    |                                                                       |                    |
| 자몽+오렌지/딸기+바나나            |                                    |                                                                       |                    |
| 에이드(레몬/청귤/오렌지/자몽/딸기/라임모) |                                    |                                                                       |                    |

|                          |  |  |  |
|--------------------------|--|--|--|
| 히또)                      |  |  |  |
| 탄산수/골드메달애플주스             |  |  |  |
| Tea                      |  |  |  |
| 복숭아아이스티                  |  |  |  |
| 얼그레이/유자차/생강차             |  |  |  |
| 캐모아일/페퍼민트/자스민            |  |  |  |
| sandwich / salad / pasta |  |  |  |
| 스터프 샌드위치+감자튀김(시그니처)      |  |  |  |
| 잠봉 치아바타 오픈 샌드위치          |  |  |  |
| 오픈 샌드위치                  |  |  |  |
| 쉬림프 아보카도 치아바타 샌드위치       |  |  |  |
| 샐러드(시그니처)                |  |  |  |
| 크로크무슈 샐러드/리코타치즈샐러드       |  |  |  |
| Toppings                 |  |  |  |
| 샐러드 채소(50g)              |  |  |  |
|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  |  |  |
| 아보카도(1/2)                |  |  |  |
| 감자튀김(150g)               |  |  |  |
| 닭가슴살(100g)               |  |  |  |
| 새우(3마리)                  |  |  |  |
| 계란/바나나                   |  |  |  |
| 리코타치즈                    |  |  |  |
| Dessert                  |  |  |  |
| 유유빙수                     |  |  |  |
| 과일빙수                     |  |  |  |
| 딸기빙수(시즌)                 |  |  |  |
| 인절미빙수                    |  |  |  |
| 하겐다즈 녹차빙수                |  |  |  |
|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가적인 제한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경쟁업체,<br>타 가맹사업자 | 당사 또는<br>지정업체에서<br>공급받은 모든<br>물품, 용역 | 공급 및 판매<br>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br>2회 위반: 1차서면 시정요구<br>3회 위반: 2차서면 시정요구<br>4회 위반: 계약 해지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 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가격 결정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 (단위 : 원) |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품명             | 그란데           | 벤티    | 변경 시<br>월별통지 | 2021년<br>12월 기준 |
| COFFEE         |               |       |              |                 |
| 아메리카노          | 3,900         | 4,900 |              |                 |
| 헤이즐넛           | 4,500         | 5,500 |              |                 |
| 카페라떼           | 4,500         | 5,500 |              |                 |
| 스터프 그림라떼       | 6,500         | 7,500 |              |                 |
| 바닐라/모카/연유라떼    | 4,900         | 5,900 |              |                 |
| 카라멜 마끼아또       | 4,900         | 5,900 |              |                 |
| 콜드브루/디카페인 콜드브루 | 5,500         | 6,500 |              |                 |
| 아포가토(하겐다즈 바닐라) | 6,900         |       |              |                 |
| NON COFFEE     |               |       |              |                 |
| 녹차라떼/홍차라떼      | 5,500         | 6,500 |              |                 |
| 흑임자라떼/고구마라떼    | 5,500         | 6,500 |              |                 |
| 딸기라떼           | 6,000         | 7,500 |              |                 |
| 다크초코           | 4,900         | 5,900 |              |                 |
| Blended        |               |       |              |                 |
| 프라푸치노 (자바칩/녹차) | 5,900         |       |              |                 |
| 오레오 스무디        | 5,900         |       |              |                 |

|                            |        |       |
|----------------------------|--------|-------|
| 요거트 스무디(플레인/딸기/블루베리)       | 5,900  |       |
| Juice/ade/soda             |        |       |
| 딸기/자몽/청포도/토마토 주스           | 5,500  |       |
| 수박주스                       | 5,500  |       |
| 자몽+오렌지/딸기+바나나              | 5,500  |       |
| 에이드(레몬/청귤/오렌지/자몽/딸기/라임모히또) | 5,500  | 6,900 |
| 탄산수/골드메달애플주스               | 3,900  |       |
| Tea                        |        |       |
| 복숭아아이스티                    | 3,900  | 4,900 |
| 얼그레이/유자차/생강차               | 4,900  | 5,900 |
| 캐모마일/페퍼민트/자스민              | 4,900  | 5,900 |
| sandwich / salad/ pasta    |        |       |
| 스터프 샌드위치+감자튀김(시그니처)        | 8,900  |       |
| 잡봉 치아바타 오픈 샌드위치            | 9,900  |       |
| 오픈 샌드위치                    | 8,900  |       |
| 쉬림프 아보카도 치아바타 샌드위치         | 8,900  |       |
| 샐러드(시그니처)                  | 9,900  |       |
| 크로크무슈 샐러드/리코타치즈 샐러드        | 8,900  |       |
| Toppings                   |        |       |
| 샐러드 채소(50g)                | 2,500  |       |
|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 1,500  |       |
| 아보카도(1/2)                  | 2,500  |       |
| 감자튀김(150g)                 | 2,000  |       |
| 닭가슴살(100g)                 | 2,500  |       |
| 새우(3마리)                    | 2,000  |       |
| 계란/바나나                     | 1,000  |       |
| 리코타치즈                      | 2,500  |       |
| Dessert                    |        |       |
| 유유빙수                       | 12,000 |       |
| 과일빙수                       | 15,000 |       |
| 딸기빙수(시즌)                   | 15,000 |       |
| 인절미빙수                      | 13,000 |       |
| 하겐다즈 녹차빙수                  | 15,000 |       |
|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 6,000  |       |

※ 권장가격 이외에 event 할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행사 등 가격할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영업환경변화에 따라서 당사와 가맹점주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동종의 업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 카페앤스터프      | -    |

☞ 귀하의 영업지역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의 [카페앤스터프]와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를 추가 입점하지 않습니다.

###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특수상권 및 활성화상권이 아닐 경우<br>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450m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br>(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br>→ 당사 담당팀 검토<br>→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br>→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br>→ 가맹점사업자 동의<br>→ 영업지역 변경 완료 |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카페앤스터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37%                   | 63%     | 없음            | 없음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0%           | 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 D-180 ~ D-90     |

|                                                                            |              |
|----------------------------------------------------------------------------|--------------|
| 예→⑤, 아니오→A                                                                 |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 제10조    |
|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0조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제10조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 제10조    |
|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10조    |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10조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 외합니다.) | 제10조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4조             |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6조             |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6조3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24조3항 / 25조 1항 | 3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 하는 경우                                        | 25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43조            |        |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44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25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제한 미준수·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 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25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25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25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 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25조, 30조       |        |
|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29조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 27조 3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14조            |        |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 32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33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34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                                                   | 34조            |        |

|                                                                |                  |  |
|----------------------------------------------------------------|------------------|--|
| 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40조              |  |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14 조, 19 조, 25 조 |  |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 36조 1항           |  |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제38조 제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제38조 제2항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8조 제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br>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제38조 제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38조 제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8조 제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제38조 제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제38조 제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                                                                                                                                                                                             | 제38조 제2항 |

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br>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는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 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조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 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 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 건)   | 이전 범위    | 절차                                                  | 비고             |
|-------|--------------|----------|-----------------------------------------------------|----------------|
| 상속    |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 모든 권리 의무 |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 인 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교육수료 및 교육 비 지급 |
| 대리 행사 | 당사 승인 시 가능   | 상동       |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 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 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 교육수료 및 교육 비 지급 |
| 업무 위탁 | 당사 승인 시 가능   | 상동       |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 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 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 교육수료 및 교육 비 지급 |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동종의 업 | 해당 없음   | 문의 : 당사 (TEL 053-965-1495)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카페앤스터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
| 협의   |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

※ 귀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시기 | 담당팀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1회/2주 | 본사 운영팀 |
| 제품의 표준화  |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       |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
| 품질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
| POS사용    |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

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성격     | 부담비율                     |                 | 분담절차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전국광고  | 브랜드광고    | 50%                      | 50%<br>(전체가맹점)  |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해 제시                                      | 전국광고(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                       |
|       | 서비스/상품광고 |                          |                 |                                                        |                                               |
|       | 가맹점모집광고  | 100%                     | 없음              | 해당 없음                                                  |                                               |
| 지역 광고 | 가맹점매출증진  | 50%                      | 50%<br>(지역가맹점)  | 해당 없음                                                  |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
| 개별 광고 | 가맹점매출증진  | 없음                       | 100%            | 해당 없음                                                  | 단독광고                                          |
| 판촉행사  | 할인행사     |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 행사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행사 시행→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       | 증정행사     | 증정상품 출하가 50%             | 증정상품 출하가 50%    | 상동                                                     | 상동                                            |
|       | 팸플렛 등 제작 | 판촉물 제작비용 50%             | 판촉물 제작비용 50%    | 상동                                                     | 상동                                            |
|       | 기타 개별행사  | 행사에 따라 유동적 (2019년 자료 없음) | 상동              | 상동                                                     |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동의 시 전체 적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 시 진행하며, 70% 미만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전단지, 카다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카페앤스터프]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촉·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 활동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귀하가 물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정산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2) 귀하가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본 계약에 의한 교육의 대가를 받고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받은 금액의 2배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갑”의 과실 없이 “을”이 일방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해지 하거나, 점포양도 등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액으로 일금 삼천만원(W30,000,000)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개월 수에 대한 로열티(직전 3개월 평균 산정)를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에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7) 당사 또는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uff

0-30271N-0-A-512-1A-5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비용                      |
|-----------------------|------------------------------------------------------|--------------------------|-------------------------|
| 합계                    |                                                      | 47일 내외                   | IV.<br>가맹점사업자의<br>부담 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br>- 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제공 | D-46~45                  |                         |
| 점포개발 및<br>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31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 가맹금 예치                | - 가맹금 및 교육비 예치                                       | D-29(1일)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 인테리어 공사<br>등(초도물품 포함) | - 공사 실시<br>- 초도물품 공급                                 | D-24~5(20일)<br>D-7~4(3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4~4(10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                                                                                                                                                                                                                                                                                                                                                                                                                                                                                                                                                |
|-----------------|------------------------------------------------------------------------------------------------------------------------------------------------------------------------------------------------------------------------------------------------------------------------------------------------------------------------------------------------------------------------------------------------------------------------------------------------------------------------------------------------------------------------------------------------|
| 점포환경<br>개선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
| 가맹본부<br>부담비용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 비용</li> <li>○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
| 가맹본부 부담<br>비용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
| 지급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ul> <p>&lt;분할지급 시 절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br/>(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
| 비용부담<br>제외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li> </ul>                                                                                                                                                                                                                                                                                                                                                                                                                |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본부<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br>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br>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br>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br>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br>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br>제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br>부담                                               | 문의:<br>지원팀 |
| 가맹점사<br>업자<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br>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br>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br>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br>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br>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br>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br>명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br>부담(가맹금에<br>포함된 통상의<br>경영지도비용<br>을 초과한 부<br>분에 한함) | 문의:<br>지원팀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

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stuff

6-30271N-0-A-5127-0000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카페앤스터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훈련종류       |              | 주요내용                             | 교육생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개점 전<br>최초교육 | 기능교육         | 메뉴 레시피 교육                        | 가맹점사<br>업자    | 이론/실<br>습 교육             | 가맹계약 체결<br>후 개점하기 전<br>까지 이수하여야<br>함 | 필수교육 |
|              | 가맹점<br>운영 교육 | 매장운영에<br>필요한 운영<br>능력<br>향상 프로그램 | 가맹점주<br>/ 관리자 | 이론 교육                    |                                      |      |
| 정기교육         | 운영교육         | 서비스 제고<br>매출증대 방법                | 가맹점사<br>업자    | 이론/<br>실습교육<br>(정기)      | 교육실시 30일전<br>에 교육시간 및<br>장소<br>등을 통지 |      |
| 비정기교육        | 특별교육         | 영업방침<br>/ 신메뉴교육                  | 가맹점사<br>업자    | 이론,<br>실습교육<br>(비<br>정기) | 교육실시 14일전<br>에 교육시간 및<br>장소 등을 통지    |      |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당사는 “카페앤스터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 최소시간 | 비용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 비고                    |
|--------------|------------------------|------|-----------------------|-----------------------|
| 개점 전<br>최초교육 | 메뉴 레시피 교육<br>가맹점 운영 교육 | 30시간 | 최초 가맹금에 포함<br>(2,200) | /                     |
| 정기교육         |                        | 3시간  | 실비                    | 외부 강사 초빙시<br>추가 실비 발생 |
| 비정기교육        |                        | 3시간  | 실비                    |                       |

###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

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stuff

0-3337-11510-0-51510-11510-0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 연번 | 지역 | 직영점명 | 주소                       |
|----|----|------|--------------------------|
| 1  | 대구 | 울하본점 | 대구시 동구 울하동로 10길 3-2 1,2층 |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16년 1개월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br>평균 매출액 | 산정기준                                                               |
|-------------------------|--------------------------------------------------------------------|
| 179,452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2025년 1월 6일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 [별첨 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 2]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tel:053-965-149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확인서 - 가맹희망자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stuff

0-3337-11910-0-554126-11248